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129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1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. 9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0. 9. 8. 접수 제17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지분전부이전등기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국식

별지